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

이재진(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문제제기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은 전례 없는 언론자유 가능성을 가져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이고 참여적인 시장으로 인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인터넷은 기존의 공간과 시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박익환·장용근, 2005). 그러나 동시에 기술적 발전에 따르는 역효과로 인하여 수많은 법적 쟁점들을 야기하였다. 즉 인터넷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범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여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new marketplace of ideas)을 창조하였고(박용상, 2008, 1219쪽)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인 공유, 참여, 결사 그리고 공동의 신념 구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졌으나(Carey, 1989), 갠디(Gandy, 1994)가 일찍이 예견한 바와 같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기보다는 불법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인터넷을 단순히 불법의 바다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못한 생각이며, 비록 부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들도 있다(김경년·김재영, 2005; 김은미·이준용, 2006).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우리가 더욱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진, 2006).

그럼에도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하였고,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행성 사업이 번창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해 지자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도 이러한 측면을 방증하는 것이다(중앙일보 2008.10.6.).

인터넷상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의 이유 중의 하나는 인터넷상의 언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 기존의 신문과 방송 매체의 그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틀이 무너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기존 매체의 구조적 속성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았다(박선영, 2000a). 이와 함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던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전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콘텐츠의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과 전과까지 담당하던 구조 하에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인 언론

사와 정보소비자인 피해자 사이의 법적 쟁점을 해결하면 되었기 때문에 법적 해결의 당사자는 명확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그 역할 또한 혼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이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해결구조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명확한 분쟁의 양당사자 간의 문제해결 구조에서부터 그 법적 책임의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련되는 다자 간의 문제해결 구조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들은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OSP의 책임, UCC 저작권 분쟁, 정보에 대한 삭제 권한 여부, 그리고 반론권 적용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하여 기존의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기존 매체와 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매체의 기술적 발전이 가져온 언론 환경의 변화를 재검토하고, 이로 인한 법적인 분쟁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매체의 발전에 따른 분쟁의 해결은 어떠한 철학적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보 매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묵은 기사의 삭제를 둘러싼 논의,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 방식으로서의 반론권 적용상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2.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

전술한 바와 같이 한 정보제공자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파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기존 매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 그 책임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묻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즉 정보제공자가 생산, 유통, 전파한 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미디어와 1인 미디어라고 불리는 블로그가 출현하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정보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매체와 같이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가,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져야 되는가,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문제가 복잡한 법적인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즉 문제가 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생산한 원래 행위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매개하고 전파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 미디어의 경우에는 기존 언론의 정보를 계약을 통해 수신하고 이를 매개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통적인 정보 생산, 유통, 전파자인 신문과 방송 등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터넷 포털 미디어가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언론성’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만일 인터넷 포털

이 언론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언론매체와 유사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와 관련한 법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언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한 전기사업자와 같은 수준에서 그 책임이 규정된다. 이때 관련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매체의 뉴스 콘텐츠가 결집되고 인터넷상에서의 뉴스 소비가 포털에 집중되면서 포털의 저널리즘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조규철, 2007). 포털 사이트가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로 인해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기존 언론과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규율하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 모두에 각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포털은 저널리즘과는 무관한 단순한 뉴스 매개자 또는 전달자라는 시각에서부터 포털은 언론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주요한 담론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1) 긍정론

먼저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털의 저널리즘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포털에서의 ‘뉴스 소비’를 탐색적으로 고찰한 한 연구는 포털이 의제 소비 단계에서 잦은 접속과 이탈을 거듭하는 ‘단발성 매체’로 ‘의제 소비의 선차성’을 띠고 있으며, 포털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됨으로써 뉴스 제공자와 뉴스의 관계가 분리되는 ‘탈 미디어적 뉴스 소비’의 징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털이 실천적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임종수, 2006).

이와 유사하게 조규철(2007)은 뉴스가 그것을 생산하는 원래 미디어로부터 분리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털의 뉴스 재매개 환경 자체가 뉴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매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임종수(2004)도 변화된 저널리즘 환경 하에서 중요한 것은 매체가 어떤 뉴스를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가 아니라) 뉴스가 어떤 유통과정(통로)을 통해 최종 소비자와 만나는가(누가 뉴스를 매개하는가?)라고 보았다. 문제는 이 새로운 포털 저널리즘의 대중성을 어떻게 진지한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연결해낼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포털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뉴스 유통과 소비구조가 과연 저널리즘이냐 아니냐는 본원적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그것의 실질적인 형태와 대중적 영향력을 냉철하게 분석해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희완(2006)은 인터넷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기사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의제설정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에서의 뉴스 소비는 포털의 뉴스 편집인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

되고, 게이트키퍼의 결과물로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박스’가 네티즌들의 1차 의 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최민재·김위근, 2006), 그리고 사회적 ‘주요의제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 (이재진·상운모, 2008)도 인터넷을 언론으로 인정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은 이미 언론으로서 기능과 의제 설정, 뉴스 선별 등의 편집과 기사의 공표 (publishing)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송경재, 2006).

한편, 유승현과 황상재(2006)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뉴스 프레임분석을 포털 미디어에 적용함으로써 포털 미디어가 사회적 갈등 현상이 발생했을 때 특정 프레임을 선택하여 뉴스 이용자들의 인식과 사고를 틀 지우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이 부분적으로 프레이밍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포털 뉴스의 저널리즘적 성격을 긍정하고 있다.

뉴스의 재매개 역할이 언론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입장도 있다. 황용석(2006)은 인터넷 포털이 비록 제한적인 편집기능을 갖지만 기존 언론이 만든 ‘뉴스의 재매개’ 활동 자체가 뉴스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게이트키퍼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해서 매기와 리(Magee & Lee, 2007)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기사의 원래 출처는 상관없이 ‘야후’(Yahoo)와 같은 뉴스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를 해당 포털의 뉴스선정기준에 의해 선택된 해당 사이트의 뉴스로 인식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뉴스 포털의 조직과 편집자적 역할이 그들을 신문사들과 유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기사에 헤드라인 달기, 콘텐츠에 가해지는 카테고리 분류나 인기기사에 대한 별도의 소개와 같은 주변 콘텐츠(peripheral content)의 제공, 그리고 기사 내용의 수정과 같은 행위는 콘텐츠의 변형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명예훼손으로부터의 면책은 사람들이 사용한 기술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행한 행위의 성격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부정론

그러나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을 부정하는 시각들은 언론성을 긍정하는 지적들에 대해서 언론의 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황성기(2007a)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다른 매체들과의 차별성을 갖는 요소는 ‘독립적인 취재 및 기사제작’과 ‘실질적·내용적 편집통제권’인데 인터넷 포털은 이러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인식하는 언론으로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뉴스의 취합과 선별을 통한 편집 기능

만이 아니라 ‘고유의 보도와 논평’을 필요로 하는데, 포털 뉴스는 정보 전달이라는 보도 기능 이외에 자체적 논평이 없다는 점에서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구본권, 2005). 한편, 광정훈(2000)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는 단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온라인 상거래’ 혹은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뉴스 제공’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지칭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1997년 일단의 미국 언론인들은 ‘저널리즘을 염려하는 언론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간 3,000여 명이 참여한 작업 끝에 정리한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Basic Elements of Journalism)에서, 커뮤니케이션·미디어·정보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지만, 정작 저널리즘의 역할은 위축되는 역설이 왜 빚어지는지에 대해 자문하고, 저널리즘 스스로 소홀히 한 ‘기본’이 무엇인지를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으로 제시된 요소 중 하나에 저널리즘의 본질은 ‘검증의 규율’이라고 밝혔다.¹⁾ 이러한 위원회의 견해를 따를 경우, 현재 인터넷 포털들은 기존 언론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정도의 자체적인 검증을 기사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²⁾ 즉 인터넷 포털이 언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확인과 검증 기능이 없는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매일경제 2006.6.27).

유사한 맥락에서 정상우(2007)는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전통적인 취재의 역할이 줄어들고 반면 수많은 정보들을 엄선하여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진 현실임을 볼 때, 변형된 혹은 확대된 언론의 범주에 포털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가 가진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언론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독자적인 편집과 취재를 하는 기존 언론매체보다는 면책의 범위가 넓은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참여와 공유로 대변되는 Web 2.0 시대에 적합한 뉴스 서비스 형태로 평가받는 구글(Google)의 뉴스 서비스처럼 웹로봇에 의해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수집된 뉴스를 기계적인 검색을 통해 해당 언론사의 원래기사로 직접 연결시켜 주는 경우에도 포털 뉴스 서비스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지는 아직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포털로 인한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이재진·상운모, 2008).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

1) 동아일보 2006년 3월 24일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3240164>)

2) 글리슨(Gleason, 1990)에 의하면, 언론은 정치권력의 협조자로서보다는 독립적인 제 4부로서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감시견이어야 한다고 한다. 포털의 언론기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포털이 담당하는 역할을 보면 포털 사이트에게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기존 언론에서 생산해낸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논평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기 때문이다.

격권의 침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같은 반대되는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익형량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그래서 기존의 매체와 유사한 매체로 포털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 매체에 적용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이때 무리하게 기존 법을 강조하기 보다는 언론중재법 등의 적용대상으로 우선 포섭을 하고, 차후에 인터넷 포털의 성격을 반영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

우리 법원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소위 ‘전여옥 의원 판례’와 동 판례의 제2심 판결, 그리고 소위 ‘변심 애인 판례’를 들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전여옥 의원 판례’의 제2심 판결에서 법원이 포털 사이트가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으나, 그러한 판단이 언론매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포털 사이트가 가진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표 1> 포털 뉴스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 관련 판례

판결일자 및 법원	판시 사항	판결 요지(명예훼손 판단관련 부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포털 사이트의 면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로서는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 기사 제공 업체와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포털 사이트 측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에 불과하고,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포털 사이트의 면책 여부에 관한 2005가단18300의 상급심 판례임.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의 핵심요소인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기능을 두루 갖추었으므로 언론매체에 해당함 네이버의 위법성조각 주장과 관련하여, 사건 기사의 경우 공익성은 인정되나 진실에 반하고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도 없어 위법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포털 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

		<p>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점 •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문제된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사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p>서울고등법원 2008.07.02. 선고 (2007나60990)</p>	<p>포털 사이트의 언론성 여부에 대한 판단. 2005가합64571의 상급심 판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함 • 배포의 면에서 기사전달은 물론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 기사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 형성 유도 • 편집의 면에서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 필요시 기사의 제목을 변경 • 취재의 면에서 언론사들도 통신사에서 공급받는 뉴스를 자사에서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므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됨 • 명예훼손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피해발생의 예견가능성 인정, 침해행위의 회피 가능성 부정,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판결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법원은 포털 사이트가 언론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털이 언론행위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내린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비록 2007나60990판결에서 언론의 요소를 배포, 편집, 취재로 보고 포털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의 언론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에까지 논의를 하고 있기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언론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판례가 집적되면서 그 해석도 명확해지리라 생각된다.³⁾ 명확한 것은 인터넷 포털

3)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특성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털 사이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인터넷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이메일 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블로그, 길라잡이 사이트로 설계된 페이지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속하도록 분야별 연결주소나 최신 뉴스, 일기예보, 스포츠 정보 등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화제가 게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포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서비스란을 두고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으로부터 뉴스 기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받아 이를 배치하여 네티즌이 열람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검색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상에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사이트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⁴⁾

황성기(2007b)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판단 시 고려할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다72194 판례⁵⁾와 ‘변심 애인 판례’를 비교분석한 후, 후자의 경우 책임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모든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발생을 전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실시한 요건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넓게 인정해 버렸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판결에서는 상기 책임 발생 요인과 책임 제한 요인을 일별한 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판결문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소위 ‘변심 애인 판례’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사에 따른 댓글, 검색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등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포털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보 매개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 사이트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적검열을 부추길 것이고, 중국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언론의 자유로운 유통과 정보의 공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박용상, 2008; 이재진, 2006).

이에 대해 박용상(2008)은 종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로부터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받은 후에만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포털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포털에게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

울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포털 사이트는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언론이나 신문법상의 언론에 해당하지는 않고, 부가통신사업자 내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고 있다.

4)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 제230조상 ‘선한사마리아인 조항’의 해석을 놓고 판례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판례가 양적으로 적으며, 아직까지 포털 사이트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될 것을 방지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8.1.(183),1611])

서 들고 있는 책임발생요인들이 너무 막연하여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인격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통지나 구제청구가 있거나, 포털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이에 대한 조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인석(2002)은 우리 대법원 판결(2001다36801)의 요지는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조화점을 찾으려는 고민이라고 보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예견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⁶⁾

3. 목은 기사의 삭제 요청에 관한 논의

인터넷상의 변화된 정보 생산, 유통, 전파 구조의 특성 중의 하나는 정보 저장 능력의 확장으로 인한 정보의 영속화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의 매체는 그 유효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정보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읽거나 시청한 후 며칠 또는 길어야 몇 개월이면 다시 찾아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개 잊혀졌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일단 정보가 게재되면 그 유통기한은 따로 없이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몇 년 심지어 수 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정보가 재생된다. 이러한 인터넷의 저장능력의 확장과 퍼나르기 등의 기능은 자칫 인격권 피해를 영속화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접 관련된 판례도 아직 없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에서 수용되는 반론권이나 ‘고침’, ‘바로잡음’ 등의 피해구제절차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지속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특히 관련 정보가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 삭제 요청의 근거와 언론사의 대응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 환경이 변화하면서 DB화 된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그리고 개인 블로그 등에 정보가 영속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⁷⁾ 정보가 개인의 인권침해와 직결되며 범죄와 관련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은 이

6) 이인석(2002)은 2001다36081판례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의무 판단 시 피해자로부터의 통지만으로는 바로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를 근거로 삼은 것은 그 통지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 될 경우에만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7) 한국언론재단 기사데이터베이스(www.kinds.or.kr)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절도 & 구속'으로 검색한 결과 표출된 수많은 기사 중 한 건(아래)은 10여 년 전 당시 신문기사의 사생활 침해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순 절도 범죄에 불과한 기사에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 거주지 및 전과 누범사실을 비롯해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 나이까지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특정신문만의 경우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신문에 해당하는 사례다.

'가전제품 상승절도'[한국일보, 1991-01-13 22면]

후에도 계속해서 처벌을 받는 이중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⁸⁾ 그리고 언론의 보도 태도나 방식이 변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해 관행적으로 피의자나 범죄자를 실명으로 보도하지 않는 점⁹⁾ 등을 들어서 삭제요청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재진·구본권, 2008).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적 공간에 복사된 기사들에 대해서 기사 관련자가 공식적으로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황용경, 2005).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해서 정보제공자인 언론사들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치를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한다. 언론사는 무엇보다 목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삭제 요청의 수용은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사는 인격권을 침해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사가 아니라면 기사 내용이 사실을 보도하며 일종의 자료로서의 기록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 시한이 지난 기사의 경우에는 청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¹¹⁾ 사실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사는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¹²⁾

또한 언론사는 비록 삭제 요청이 타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현실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한다. 즉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언론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삭제 가능한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이재진·구본권, 2008), 삭제를 위한 청구 대상의 기한을 어느 정도까지 잡을 것인지 명확치 않으며, 과거 기사 삭제에 따르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와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포털 등을 통해

서울시경 특수대는 12일 김대선씨(35·전과4범·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856) 등 2명을 상습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길진씨(26)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고향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일 상오 10시경 경기 부천시 중구 중동 769 강중선씨(30) 집의 잠긴 문을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VTR 1대를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다.

- 8)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이중처벌 금지를 밝혀놓았다. 아울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전과기록과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 9) 우선 법원은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죄판결 확정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1999년 1월 대법원은 소위 ‘산업스파이 오보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시키려면,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등과 이로 인한 권리 침해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1999.1.22. 선고 9710215 판결). 이 판결 이후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관행이 개선되고 사건 당사자의 실명 보도에 관한 기준 또한 상당히 엄격해졌다(이재진, 2006).
-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며 언론이 정보원에 접근할 권리와 취재내용을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함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밝혀놓았다.
-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 12) 우리 대법원은 사실성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표된 사실이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사한 바 있다(1999.1.26. 선고 97다10215/97다10222 병합).

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면 인터넷의 속성상 한 곳의 기사, 예를 들어 언론사의 DB에 남아있는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실제로는 별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고 피력한다. 결국 언론사는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삭제는 어렵다고 인식한다(이재진·구본권, 2008).

아울러 언론사는 기사에 대한 법의 모순적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즉 묵은 기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며, 비록 언론사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기사는 행정적 효력을 갖지 않은 사적 기록물로서 사적 소유의 성격을 띠며, 대개 기사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내용이며(박용규, 2001), 아울러 언론보도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채 법률적 논의와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법률중심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언론의 본질적 속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법리적 해결책의 모색

피해자와 언론사의 상충되는 견해를 비교형량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요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묵은 기사(과거 기사)를 삭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법리적 검토가 쉽지 않은데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논의와 판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간 기사가 형법상의 처벌이 종료된 이후에도 잔존하여 이중처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재판을 통해 형사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 국가기관이나 언론 등에 의해 성범죄 내용이나 신상이 공표되거나 보도되는 일로 인해 이중처벌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으며(박용상, 2003a; 2003b), 또한 2003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에 있어서도 이중처벌 논란은 계속되었다.¹³⁾

법률상(형법) 우리나라는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죄추정원칙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법규정은 언론의 핵심적 기능인 보도를 통한 사회감시라는 공적 기능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이재진, 2006; 박선영, 2003). 즉 기록 매체의 역사적 속성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법익의 보호와 충돌하게 됨에 따라 기사의 삭제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은 기존의 쟁점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의사실 게재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04년 6월 26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위헌 심판 청구에서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2003.6.26. 선고 2002헌가14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무방한데, 이는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보다 공익적 요청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재판의 공개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 보장의 목적을 떠므로 형벌 사실의 공개가 위헌이며(김경제, 2003; 2004), 신상공개가 당사자에게 창피를 주려는 목적이므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13)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미와 배경'. <문화일보>, 2001년 8월 30일; '성범죄 신상공개 합헌' 의미와 배경'.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26일.

(문재완, 2003)과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는 형식적인 면에서 형벌로 볼 수 없다는 지적(김상겸, 2003)이 대립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명보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추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인격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지적(류승삼, 1992)과 형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실명으로 보도되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은 법에 의한 처벌보다 더욱 가혹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박용상, 2003a; 2003b). 이러한 점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1998년 판결(소위 '남편 폭력 청부사건')에서 범인과 혐의자에 대한 보도는 범죄 자체에 대한 보도만큼 공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기사 게재의 경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에도 언론의 과거 기사 유통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정보공개라는 측면과 함께 동시에 이중처벌 또는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중요한지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인터넷 게재는 피의사실 공표죄와 무죄 추정 원칙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범죄수사를 통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관심사로 인정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일상적으로 피의사실이 보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재진, 2006). 이러한 피의사실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에 실리는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공개수사가 필요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가질 사항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박선영, 2000b)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가 생산, 유통, 전파되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나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보다 이를 조정할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언론사별로 자율적으로 내부적 기준을 설정하고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과거 기사의 삭제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판단해 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뉴욕 타임즈>의 경우 퍼블릭 에디터를 중심으로 비록 역사적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는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하는 등의 문제해결책을 세워나가고 있다(Hoyt, 2007).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하여 과거 기사를 수정 및 삭제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종이신문에 실린 글은 수정이나 삭제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실린 글을 전자적 정보로 인정하여 수정, 삭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제10조)과 형실효법상의 과잉처벌 금지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언론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 근거하여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간의 비교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과거의 피의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형기를 마친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면이나 복권과 같은 법률적인 절차의 효과는 무의미해지며 동시에 행복추구권도 적용되지 못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 무한한 접근의 자유를 누린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¹⁴⁾

4. 인터넷 반론권 적용상의 논의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파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언론 분쟁은 이제 더욱 증가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인격권 침해를 신속하고 조화롭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피해구제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중재법상 인정되고 있는 반론권 제도 적용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⁵⁾

1) 반론권 적용의 요건

인터넷 신문이 종래의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방송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의 대

14) 인터넷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권리의 개념화와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해 이재진과 구분권(2008)은 프라이버시의 확장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프라이버시권이 개념화되고 법제화되기 시작한 19세기 말엽의 경우에는 '간섭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충분했으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기사화 되지 않고 기사화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수정이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인 '잊혀질 권리'가 개념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또한 H. Kato 등이 주장하는 커뮤니케이션권의 일부인 'right not be communicated' 개념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인의 정보가 타인들에 의해서 이용되거나 소통되지 않도록 할 권리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유일상(2007).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박영사]

15)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론권은 현재 유럽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Lee, 2008). 각 국은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인터넷 반론권 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미네소타대 실하연구소(Shilha Institute, 2003)에서 유럽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볼 수 있듯, 인터넷에 반론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터넷 운영자는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 필자에게 수정을 강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전검열과 마찬가지로여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막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인터넷에 반론권을 인정한다면 표현행위에 위축효과(chilling effects)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흐름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상이 된 것은 2005.1.27. 제정·공포되고 2005.7.28.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에 의해서다.¹⁶⁾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반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신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의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¹⁷⁾ 이에 따르면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만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이나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¹⁸⁾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으며(제14조 제2항),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요하지 않는다(제2조).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고(제14조 제3항), 피해자는 반론권 청구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26조). 만일 언론사가 피해자와 반론보도에 합의하게 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발송 또는 게재해야 한다(제15조 제3항).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인터넷신문의 반론권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의 신문·방송과 유사하다. 이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에 기존의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에 단순히 인터넷신문을 추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절차나 적용에 있어서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대로 반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2) 반론권 조정 신청 및 문제점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에 47건이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조정 신청 건수가 2007년 1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잡지, 뉴스통신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

16)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언론기본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규정된 ‘중재’는 실제로는 ‘조정’이었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중재’는 ‘고유한 의미의 중재’와 ‘조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7) 신문법 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황용석·강원(2001). 『언론사 닷컴:현황과 과제』, 서울:한국언론재단, 163~169.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뉴스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많다. 또 뉴스의 주제가 제한적이지만 심층적인 경우가 많다.

석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무엇보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에 있어 2007년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38.9%, 피해구제율은 65.0%로 전체 매체의 피해구제율 64.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2007년도 합의 44건 중 반론보도문 게재를 전제로 한 것은 30건이다.

<표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 처리 결과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2005	48	15		2		13			6	12	(10)		59.5
2006	77	34		2		13		5		23	(18)		72.2
2007	113	44				22		5	5	37	(23)		65.0
계	238	93		4		48		10	11	72	(51)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조정신청인 별로 분류했을 때 일반인이 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과 단체가 각각 16건, 공인 9건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청인들은 부읍장, 하위직 경찰관, 영화감독, 교장, 그리고 국회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나 정부가 신청한 경우에 국회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 3건, 정부기관 1건 등으로 나타나 수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매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반론권을 남용한다는 지적과는 다소 어긋나는 것이다. 기각 또는 각하된 10건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6건), 인터넷신문이 아니어서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님(2건), 보도 내용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경우(2건) 등이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명확한 것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의 매체와는 그 게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문의 내용, 크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사건 중 조정성립된 것은 30건으로, 반론(정정)보도문 보도(게재) 형식은 기존 신문·방송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게재 시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가 보도 횟수와 보도문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게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19) 피해구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조정성립**된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 양 당사자 이의 없이 동의된 경우, 취하, 조정불성립 결정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중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피해구제율은 이 피해구제 건수를 각각 각하 건수를 제외한 조정 건수로 나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 간에 **조정성립된** 30건 중 13~24시간이 17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24시간 초과~48시간 이하 3건, 48시간 초과~72시간미만 4건, 72시간 초과 3건, 12시간 이하 1건으로 집계됐다. 1개월 동안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도 1건 있었다. 게재 날짜만 지정하고 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시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1건이 있다.

둘째, 게재 위치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쇄매체의 경우 원래 기사가 게재된 곳에 반론문을 실는 것이 원칙이다.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에서 몇 번째 꼭지에 반론문을 보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연구결과 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화면에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 19건이다. 단순히 초기화면에 게재하기로 **조정성립된** 8건을 합치면, 모두 27건의 반론보도문이 초기화면에 게재된 것이다. 나머지 3건은 게재 위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 기사가 초기화면이 아닌, 하위 메뉴에 배치된 것과 상관없이 초기 화면에 반론문을 게재하기로 **조정성립된** 것은 피해의 심각성을 양 당사자가 함께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을 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에 저장된 원 기사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하도록 조건을 추가로 다는 경우가 11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매체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반론권 부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이다.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원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이 18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12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글자 크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기와 아울러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경우 동일 화면이라 하더라도 글자 크기가 다르고, 고딕체냐 또는 명조체냐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글자 크기와 함께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이다. 반론보도문의 그 내용 못지않게 자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자수가 반론문 효과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원문 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석 결과 **조정성립**에 이른 30건 가운데 300자 이상의 보도문이 게재된 것은 3건이며, 이 중 가장 긴 것은 740자에 이른다.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소송과 관련해 반론(정정)보도문 판결 40건을 분석한 결과 글자 수가 300자 이하가 25.0%이며, 301~400자가 42.5%, 401~500자가 12.5%로 나타났다.²⁰⁾ 이는 인터넷신문

이 기사를 게재할 공간적 제약이 다른 매체에 비해 덜하다는 점에서 장문의 보도문이 게재될 여지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보도문이나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에 게재된 반론(정정)보도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사 삭제 요청이다. 기존 매체에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삭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30건 가운데 10건이 삭제를 전제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중 1건은 다른 요구사항 없이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 또 4건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제의 기사를 삭제하는 동시에 이 기사가 게재된 포털 사이트에서도 기사를 삭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정보 전파력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 운영 기술상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이재진·구본권, 2008).

이러한 견해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에는 이미 기존 매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반론권 청구 자격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정도 문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반론권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 및 효과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중재부를 두는 것을 포함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 쟁점은 기존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서 점차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론권 청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5. 요약 및 결론

기존의 언론관련 법제는 언론사 중심의 정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래서 언론사가 생산하고 유통한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의 특징인 보도의 광범위성, 신속성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패러다임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즉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주요 정보 생산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졌으나, 현재는 개인들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처럼 단지 정보를 매개할 수도 있는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인터넷 매체가 처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 중에서 가장 핵

20) 언론중재위원회(2008).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57쪽.

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언론여부) 논의, 묵은 기사 또는 과거 기사의 삭제 청구권 논의,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의 반론권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와 같은 쟁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재·개정과 판례의 집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통합인터넷법을 만들어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법을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도록 적절히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는 현재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비록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법원은 점차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저널리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편집, 취재, 배포의 요인을 통해 고려컨대 언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문법과 언론법의 통제를 받으며, 아울러 반론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개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오래된 정보(특히 묵은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나 운영자의 자발적인 조치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래된 정보나 묵은 기사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가 영속화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론권의 행사도 인터넷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반론권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실행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인터넷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전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부를 중재위원회 내부에 별도로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결론적으로 기존 매체와는 다른 생산, 유통, 그리고 전파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언론중재법을 적절히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그 개정은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영향력으로 인해 침해되기 쉬운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적절한 비교형량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매개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포털이 뉴스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한 행위와 의도를 고려하여 책임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오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록 요구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구제책은 비교적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인격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거나, 온라인상의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구제책을 체계적·통일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인터넷 포털에게 지나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는 태도는 자칫 인터넷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권 (2005).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경년·김재영(2005).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가능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19(3), 7-40.
- 김경제(2003). 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법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공법연구』, 32권 4호, 92~112.
- 김경제(2004). 과잉금지의 원칙의 검토방법. 『사법행정』, 45권 3호, 24~37.
- 김상겸(2003).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헌법 합치여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9권 4호, 175~203.
- 김은미·이준웅(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65-94.
- 임종수 (2004). 미디어로서 포털. 『한국언론학회 2004 가을철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류승삼(1992). 실명보도와 인권. 『언론중재』, 43호(여름), 28~37.
- 문재완(2003).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9권 2호, 333~369.
- 박선영(2000a). 인터넷 신문·방송과 반론보도. 『언론중재』, 74호.
- 박선영(2000b).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공법연구』 제28집 2호, 159~180.
- 박선영(2003).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9권 4호, 152~168.
- 박용규(2001). 한국 신문 범죄 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56~185.
-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서울:현암사.
- 박용상(2003a). 범죄 보도와 익명 보도의 원칙 1. 『언론중재』, 88호(가을), 68~86.
- 박용상(2003b). 범죄 보도와 익명 보도의 원칙 2. 『언론중재』, 89호(겨울),

- 36~53.
- 박익환·장용근(2005).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세계법학연구』, 11권 2호, 114~128.
- 송경재 (2006).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봄호, 178~210.
- 유승현·황상재 (2006). 포털미디어의 뉴스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다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호, 197~232.
- 유일상(2007).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박영사.
- 이민영 (2007). 초점: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 19권 12호, 1~23.
- 이인석 (2002).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저스티스』, 67호, 175~201.
- 이희완 (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 『신문과 방송』, 2월호, 128~132.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구본권(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172~212.
- 이재진·상윤모(2008). 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안 연구. 『방송연구』, 13권 1호, 265~296.
- 임종수 (2006). 온라인 뉴스 양식과 저널리즘의 변화.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2호, 37~73.
- 조규철 (2007).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 뉴스 박스 기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민재·김위근 (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437~464.
- 황성기(2007a).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2007-1. 197~232.
- 황성기(2007b).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호, 149~190.
- 황용경(2005).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 97호(겨울), 108~115.
- 황용석 (2006). 한국 온라인저널리즘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에 대한 메타분석.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1호, 128~169.
- 황용석·강원(2001). 『언론사 닷컴: 현황과 과제』. 서울:한국언론재단.

- Gandy, O. H.(1994). "The information of superhighway as the yellow brick road." *The National Forum*, 74(2), 24~28.
- Hoyt, C. (2007). When bad news follows you. *New York Times* Public Editor Column, 2007.8.26.
(<http://www.nytimes.com/2007/08/26/opinion/26pubed.html>)
- Lee, J. (2008). "The right of reply," 4411~4415, in Wolfgang Donsbach(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Vol. X*. Malden, MA: Blackwell.
- Magee, R. G. & Lee, T. H. (2007). Information conduits or content developers? Determining whether news portals should enjoy blanket immunity from defamation suits.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12(4), 369~404.
- Silha Center (2003). Comments of the Silha Center for the study of media ethics and law, 1~11. University of Minnesota.